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0517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05173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388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변경 전: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림

담당변호사 박현진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홍민우, 안수영

변론종결 2022. 6. 22.

판결선고 2022. 9. 7.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3887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8. 10. 11.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C에 각 특허청 2019. 1. 30. 접수 F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에 각 특허청 2018. 10. 11. 접수 G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9. 1. 30.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① I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산재보험에는 1996. 3.부터, 고용보험에는 1998. 1.부터 각 2018. 9.까지 가입되어 있던 사실은 확인되고, 소외 회사의 직원 또는 사내이사였던 이 법원 증인 N이 '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ㄱ) I는 2011년에는 L대학교 정보미디어학부 미디어콘텐츠과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M대학교에서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는 시간강사로, 2014. 3. 1.부터 2022. 2. 17. 현재까지는 겸임교수로 재임하면서, 매학기 1~3개의 강의를 맡아 주당 3시간 내지 9시간의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4, 16호증에 의하면, 2017년 1학기에는 매주 목요일 15:00경부터 18:00경까지, 2018년 1학기에는 매주 목요일 9:00경부터 12:00경 및 15:00경부터 18:00경까지 각 M대학교 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였다), (ㄴ) I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J의 배우자이고(2000. 7. 18.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소외 회사가 가지는 매출채권을 양수받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I는 이러한 양수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I가 소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소외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특히, I가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소외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소외 회사, 피고 C, I 사이에서 I의 임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양도 계약서, 대물변제 합의서 등)가 없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은 I 본인이 아닌 피고 C이며, I는 2018. 9. 3.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1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8. 10. 11. 자신의 미지급 임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 C에 양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I는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10. 2.에야 피고 C의 발행주식 전부를 2억 원에 양수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소외 회사의 I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이재찬, 판사 김영진

별지

선택한다.